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3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현행 공사집행에 있어서 읍면에 위임된 2,000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이 소액이라는 읍면장의 공사집행금액 상향조정 건의가 있으며,

○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재정여건 등 경북도내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읍면에 위임된 공사집행금액 2,000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을 3,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본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, 읍면의 행정 능률의 향상에 기어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

〔별표〕 위임사무명(권한위임)중 - 재무회계규칙에 관한사항

1. “2,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”을 “3,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” 으로 상향조정

3. “2,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”를 “3,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”로 상향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

1)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등)

2)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(지출원인행위)

나. 예산에 관한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.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)

4. 참고자료

○ 경북도내 타시군 공사집행 권한위임 금액 현황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 중 재무행정, 2.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”

구분	위 임 사 무 명	단위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재무행정	2.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사항	1. 예정금액 3,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	지방재정법 제67조	읍면
		2. 주민부담 2분의1 이상인 공사집행	〃	〃
		3. 3,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	〃	〃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〔별표〕 위임사무명(권한위임) 2. 재무회계규칙중 다음사항 1) 예정가격 2,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2) 주민부담 2분의1 이상인 공사집행 3) 2,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	〔별표〕 위임사무명(권한위임) 2. 재무회계규칙중 다음사항 **1) 예정금액 3,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** 2) 주민부담 2분의1 이상인 공사집행 **3) 3,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**